

<p>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개최)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</p> <p>제3조(회기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.</p> <p>제4조(집회)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9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·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 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. <p>제5조(심의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을 매 회기마다 지급하되,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 단,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기중 현지조사·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3조제2항, 제3항의 “회의수당”을 각각 “회기수당”으로 한다.</p> <p>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③여비정액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 7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와 별표 8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,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와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,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,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, 별표 5 국내이전비지급표, 별표 6 국외이전비정액표, 별표 7 국외준비금지급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.</p> <p>별표 1의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 지급액 월 500,000원을 월 700,000원으로, 보조활동비 월 100,000원을 월 200,000원으로 한다.</p> <p>별표 2의 “회의수당”을 각각 “회기수당”으로 하고, 회기수당 지급액 일 60,000원을 80,000원으로 한다.</p> <p>별표 3 비고 5의 “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”를 “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”로 하고, 별표 4 비고 1 “국외여비규정”을 “공무원여비규정”으로 하고, 별표 4 비고 1 “별표 2”를 “별표 4”로 하며, 비고 2 “국외여비규정 제22조”를 “공무원여비규정 제23조”로 하고, 비고 3 “국외여비규정”을 “공무원여비규정”으로 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서울특별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조중 “회의수당”을 “회기수당”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회의수당)을 제3조(회기수당)으로 하고,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①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 <p>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제3항의 “서울특별시의회위원보수등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”로 한다.</p> <p>②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의 “서울특별시의회위원보수</p>